

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제9차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16. 11. 11. (금요일), 10:30~12:3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박영규, 김영운, 김해숙, 서연호, 정해임,  
최성자, 허영일 (이상 7명)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		
【검토사항】		
1	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 보유단체 인정 검토	공개
【보고사항】		
1	국가무형문화재 제84-1호 '고성농요'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	공개

## 검토사항

안전번호 무형2016-09-001

### 1.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 보유단체 인정 검토

##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 
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6년도 전승자 총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단체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
- 지정일 : 1989.12.1.
- 전승자 현황
  - 전수교육조교(1명): 강문희(여, '96.7.1. 인정)

##### 2) 보유단체 인정조사 추진경과

-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(음악분야)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실시 ('09.4~7월/한국국악학회)
  - 제주민요를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 검토
- 보유단체 전환 용역결과 원안접수(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, '09.9.11.)
-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정 보유단체 추천 요청('13.4월)
- 2014년도 전승자 총원계획 수립에 포함('13.12월) : 보유단체 전환
-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정 보유단체 추천 재요청('15.8월)
- 보유단체 신청 접수('15.10월)
  - 대상단체 : 제주민요보존회
- 2016년도 전승자 총원계획 수립에 포함('16.1월)

- 조사위원 인력풀 추천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('16.3월)
-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('16.10.31.)
- 현지조사 실시('16.11.1.)

##### 3) 조사개요

- 조사일시 : '16.11.1.(화) 10:00
- 조사장소 :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(제주 서귀포)
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5명
- 조사대상자 : 제주민요보존회
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량평가, 면담조사 및 전승활동 실적 등 평가

#### 라. 검토의견

- '제주민요'의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학술연구용역결과 및 문화재위원회 의견이 있었음.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,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.

#### 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 -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'제주민요'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.
  - 인정 예고 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보유단체 인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토록 함.
  - 소위원회 위원은 무형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함.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, 원안가결 7명

#### 바. 특기사항 : 없음.

## 보고사항

안전번호 무형2016-09-002

### 1. 국가무형문화재 제84-1호 ‘고성농요’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

##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제84-1호 ‘고성농요’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제84-1호 ‘고성농요’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제84-1호 ‘고성농요’
- 지정일 : 1985.12.1.
- 전승자현황
  - 보유단체 : 고성농요보존회(‘86.11.1. 인정)
  - 보유자(1명) : 김○○(‘39년생, 남, 앞소리, ‘92.7.1. 인정, ‘15.9.21. 해제)  
※ 인정해제 처분 취소 판결일 : ‘16.10.6.
  - 전수교육조교(1명) : 이주수(남, 앞소리, ‘07.3.12. 인정)

##### 2) 진행경과

- 고성농요보존회에 대한 회계 및 전승실태 조사(‘13.3.15.) 결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(‘13.5.16.)
- 판결결과(‘15.1.5.) : 구약식 벌금 100만원
  - 처분죄 : 업무상횡령,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
- 피의자(김○○)가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 납부하여 형 확정(‘15.2.9.)
- 보유자 인정 해제 검토(‘15.5.22.) 및 인정 해제 심의(‘15.9.11.)

- 보유자 인정해제(‘15.9.21.)
-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소 제기(‘15.10.30.)
  - 원고/피고 : 김○○/문화재청장
  - 1심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36/‘16.5.13.) 원고 승소
  - 2심(서울고등법원 2016누48722/‘16.10.6.) 원고 승소

##### <1심 판결내용>

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.

-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.
  - 보유자 인정해제는 무형문화재 계승, 전수에서 보유자 지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함
  - 원고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, 원고의 행위에 보유자 지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
  - 고성농요 유일한 보유자로 고성농요 전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  -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이전부터 보존회장 역임, 관련 서적 저술, 고성농요 기념관 건립 등 고성농요 발전을 위해 힘써왔음

##### <2심 판결내용>

1심판결 이유와 같음

-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(문화재청)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

##### ○ 후속조치

- ‘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’ 관보 고시 및 해당자·보유단체·지방자체 단체에 공문 알림

#### 라. 향후계획

- 보유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재개(‘16.11월분부터)
- 소송비용 지급

#### 마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, 접수 7명

#### 바. 특기사항 : 없음.